## 『해피라이프 정기예금』특약

#### 제 1 조 약관의 적용

『해피라이프 정기예금』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 및 『거치식 예금 약관』을 준용합니다.

## 제 2 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합니다.

#### 제 3 조 가입대상 및 운용지시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수탁자(이하"예금주"라 함)로 하며, 이 예금의 운용지시를 할 수 있는 고객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고객(이하"가입자"로 함)입니다.

## 제 4 조 계약기간 및 자동 재예치

-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 년, 2 년, 3 년으로 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만기 시,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「최초 계약기간」단위로 자동 재예치 됩니다.
- ③ 최초 신규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 상에 자동재예치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자동재예치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 '자동 재예치 이메일통지'를 신청한 예금주에게는 만기일(자동재예치일) 1개월 전에 자동 재예치됨을 이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.

#### 제 5 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 원 이상으로 합니다.

#### 제 6 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

-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신규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.
- ② 이 예금은 신규일 및 자동 재예치일을 이율결정일로 합니다. 해당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의 이율을 해당일의 이율로 하여적용합니다. 다만,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을 해당일로 합니다.

#### 제 7 조 이자지급방식

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만기 일시 지급식으로 하며, 자동 재예치 시에는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.

## 제 8 조 중도해지

- ① 중도해지시는 신규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6 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합니다. 다만,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.
-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정기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.
  - 가. 퇴직으로 인한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  - 나.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
  - 다.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
  - 라.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  - 마. 수탁자의 사임
  - 바.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  - 사.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급여이전
  - 아. 수수료의 징수
  - 자. 자산의 교체매매(이하 "스위칭"이라 합니다)
- ③ 예금 만기이전의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 해지이율은 신규일 (자동 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)의 기간별 약정이율(가산금리 포함)로 지급합니다. 이때 약정이율이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합니다. 다만 스위칭시에는 기간별 약정이율(가산금리 포함) '-1%'를 적용하며, 정기예금간의 스위칭 시에는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합니다.

#### 제 9 조 분할지급

① 이 예금은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 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, 자동 재예치된 경우에는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를 포함하여

- 3 회 이내에서 분할 해지가 가능합니다.
- ② 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 할 수 없습니다.

## 제 10 조 예금자보호
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당행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 인당 최고 5 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.

## 제 11 조 기타

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, 통장발급이 불가하며,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이 불가합니다.

# 부 칙(변경사항)

변경일	변경내용	관련조항
2011.11.16	자동재예치시 고객의사 확인사항 추가	제4조, 제6조
		제7조, 제8조
		제9조
2013.11.15	재예치사실 고객통지 명확화	제4조, 제6조
	이자율 확인방법 명확화	제8조